h·well 국민건강보험 | 보도자료 |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2026.6.30.(화) 10:00 이후 배포 2026. 6. 2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승인번호 제 350006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올해로 제도 시행 18주년을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6월 30일(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통계포털 시스템 KOSIS (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하여 서비스 할 예정이다.

<붙임> 1.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주요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담당 부서	빅데이터운영실 빅데이터통계부	책임자	부 장	김정은 (033-736-3404)
		담당자	팀 장	이선미 (033-736-3461)
배포 부서	홍보실 미디어소통부	책임자	부 장	차철호 (033-736-1404)
		담당자	팀 장	이경아 (033-736-1420)

붙임1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 **(신청·인정)**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23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6.0% 증가, 판정대비 인정률은 90.1%(전년대비 0.6%p↑)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55만 1천 명으로 전년대비 4.9% 증가

※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1,100만 명으로 전년대비 5.8% 증가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년대비)
신청자	1,281,244	1,348,961	1,429,046	1,477,948	**1,550,961**	4.9
등급판정자	1,097,462	1,160,850	1,238,495	1,301,069	**1,370,798**	5.4
인정자	953,511	1,019,130	1,097,913	1,165,030	**1,235,045**	6.0
판정대비 인정률	(86.9%)	(87.8%)	(88.6%)	(89.5%)	**(90.1%)**	-
65세이상 노인인구	8,912,785	9,377,049	9,858,810	10,399,813	**11,002,949**	5.8

주 1)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포함,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자 제외)
2) 등급판정자는 시군구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자와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기각,각하 제외, 사망, 중복제외)
3) 인정자는 등급판정자 중 등급내(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인정등급별)** 4등급 인정자 수가 57만 8천 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 3등급 32만 6천 명(26.4%), 5등급 14만 6천 명(11.8%) 순

(단위: 명,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계(a+b)		1,235,045	54,999	100,686	325,661	577,572	146,088	30,039
(구성비)		100.0	4.5	8.2	26.4	46.8	11.8	2.4
건강보험	소계(a)	1,023,149	45,574	83,482	273,646	475,423	120,353	24,671
	일반	515,417	23,840	40,545	135,331	239,018	62,701	13,982
	감경	507,732	21,734	42,937	138,315	236,405	57,652	10,689
의료급여	소계(b)	211,896	9,425	17,204	52,015	102,149	25,735	5,368
	의료급여	11,790	499	1,025	3,279	5,581	1,221	185
	기초	200,106	8,926	16,179	48,736	96,568	24,514	5,183

주 1) 인정자: 해당 연도말 장기요양등급 유지자 수(사망자 제외)
2) 감경: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3항에 의거하여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항목명을 '경감'에서 '감경'으로 변경)
3)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기요양 급여 현황

○ **(급여비용)**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7조 6,840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

- 공단부담금 16조 1,618억 원(전년대비 9.4%↑), 공단부담률 91.4%로 전년대비 0.1%p 증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년대비)
급여이용수급자(명)		899,113	999,451	1,073,452	1,140,725	**1,207,651**	5.9
급여제공일수(만 일)		19,224	21,578	22,988	24,574	**26,072**	6.1
장기요양 급여비용(억 원)		111,146	125,742	144,948	161,762	**176,840**	9.3
공단부담금(억 원)		100,957	114,442	131,923	147,675	**161,618**	9.4
공단부담률(%)		90.8	91.0	91.0	91.3	**91.4**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원)	1,322,679	1,356,473	1,439,200	1,495,694	**1,540,280**	3.0
	공단부담금(원)	1,201,390	1,234,554	1,309,897	1,365,413	**1,407,693**	3.1

주 1)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용)*100
2) 급여이용수급자: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 말 까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등 포함)
3)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용(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4) 급여제공일수는 급여종별로 동일한 날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하루로 산정하며, 동일한 날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각각 산입

○ **(유형별 공단부담금)**

- 재가급여 10조 1,897억 원(63.0%), 시설급여 5조 9,455억 원(36.8%)
- 2024년 대비 재가급여 10.3%, 시설급여 8.0% 증가

(단위: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계(a+b+c)	100,957	114,442	131,923	147,675	**161,618**	9.4
재가급여(a)	61,907	70,922	82,402	92,412	**101,897**	10.3
- 방문요양	42,145	48,095	55,502	61,977	**68,184**	10.0
- 방문목욕	1,631	1,905	2,238	2,535	**2,772**	9.3
- 방문간호	315	346	409	492	**604**	22.8
- 주야간보호	15,366	17,831	21,102	23,863	**26,415**	10.7
- 단기보호	73	67	71	85	**97**	14.1
- 복지용구	2,377	2,677	3,080	3,461	**3,827**	10.6
시설급여(b)	39,040	43,465	49,394	55,041	**59,455**	8.0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35,917	40,329	46,183	51,757	**56,207**	8.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123	3,136	3,211	3,284	**3,248**	-1.1
통합재가서비스(C)	11	55	128	223	**266**	19.3

주) 각 연도말 기준

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장기요양기관)** 2025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9,734개소로 전년대비 676개소(2.3%) 증가

- 재가기관 23,373개소(전체의 78.6%), 전년대비 638개소(2.8%) 증가
- 시설기관 6,361개소(전체의 21.4%), 전년대비 38개소(0.6%) 증가

(단위: 개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계	21,334	6,150	22,097	6,269	22,735	6,323	**23,373**	**6,361**
서울	3,144	502	3,223	488	3,262	480	**3,359**	**483**
부산	1,335	119	1,373	122	1,373	122	**1,433**	**126**
대구	1,154	265	1,216	266	1,291	263	**1,319**	**265**
인천	1,237	485	1,285	500	1,354	519	**1,419**	**512**
광주	791	99	820	101	826	100	**875**	**110**
대전	703	147	732	156	765	156	**748**	**159**
울산	342	55	358	65	377	71	**384**	**71**
세종	66	19	73	21	78	22	**80**	**21**
경기	4,607	2,136	4,729	2,188	4,947	2,208	**5,092**	**2,224**
강원	606	327	641	332	653	335	**676**	**334**
충북	726	325	760	315	786	323	**810**	**320**
충남	1,065	359	1,113	368	1,115	372	**1,135**	**363**
전북	1,198	252	1,263	251	1,266	251	**1,261**	**254**
전남	1,053	313	1,078	325	1,116	330	**1,153**	**329**
경북	1,512	426	1,530	431	1,535	428	**1,572**	**437**
경남	1,624	251	1,714	271	1,797	274	**1,861**	**282**
제주	171	70	189	69	194	69	**196**	**71**

주) 각 연도말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지정 기준, 휴.폐업 제외)

○ **(종사인력)** 2025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72만 6,809명으로 전년대비 2만 2,276명(3.2%) 증가

- 요양보호사 65만 4,034명, 전년대비 1만 7,134명(2.7%) 증가
- 사회복지사 4만 4,909명, 전년대비 3,274명(7.9%) 증가
- 간호조무사 1만 7,300명, 전년대비 754명(4.6%) 증가

※ 2025년 종사인력 비중: 요양보호사 90.0% > 사회복지사 6.2% > 간호조무사 2.4% 순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년대비)
계	계	562,697	623,870	673,946	704,533	**726,809**	3.2
	사회복지사	33,736	37,027	39,499	41,635	**44,909**	7.9
	의사(계약의사포함)	2,349	2,368	2,400	2,471	**2,475**	0.2
	간호사	3,645	3,881	4,385	4,989	**5,719**	14.6
	간호조무사	14,196	15,118	15,967	16,546	**17,300**	4.6
	치과위생사	12	16	7	7	**4**	-42.9
	물리치료사	1,636	1,792	2,029	2,252	**2,399**	6.5
	작업치료사	1,088	1,182	1,235	1,230	**1,294**	5.2
	요양보호사	507,473	564,243	610,069	636,900	**654,034**	2.7
	영양사	1,147	1,138	1,229	1,275	**1,253**	-1.7
재가	계	465,826	521,336	560,253	581,917	**595,856**	2.4
	사회복지사	25,509	28,121	30,002	31,613	**34,146**	8.0
	의사(계약의사포함)	88	81	71	64	**59**	-7.8
	간호사	2,100	2,275	2,620	3,001	**3,423**	14.1
	간호조무사	5,589	6,035	6,209	6,441	**6,723**	4.4
	치과위생사	12	16	6	7	**4**	-42.9
	물리치료사	297	336	382	444	**461**	3.8
	작업치료사	144	151	170	181	**200**	10.5
	요양보호사	434,041	486,523	522,996	542,356	**552,882**	1.9
	영양사	77	82	111	120	**132**	10.0
시설	계	104,973	111,682	122,667	130,839	**138,047**	5.5
	사회복지사	8,294	9,000	9,589	10,082	**10,818**	7.3
	의사(계약의사포함)	2,322	2,340	2,373	2,449	**2,455**	0.2
	간호사	1,594	1,660	1,824	2,055	**2,365**	15.1
	간호조무사	9,495	9,987	10,569	10,864	**11,323**	4.2
	치과위생사	0	0	1	0	**0**	-
	물리치료사	1,429	1,543	1,730	1,885	**2,006**	6.4
	작업치료사	988	1,073	1,103	1,082	**1,134**	4.8
	요양보호사	79,799	85,053	94,379	101,276	**106,838**	5.5
	영양사	1,075	1,064	1,128	1,167	**1,131**	-3.1

주 1) 각 연도 말 지자체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 직종별 중복 포함
2) 계 및 의사·요양보호사 직종(의사+계약의사, 요양보호사1급+2급)은 중복인원 제거,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제외
3) 조리원,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음

4. 장기요양 보험료 현황

○ **(부과)**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11조 2,294억 원으로 전년대비 4,522억 원(4.2%) 증가

– 직장보험료는 9조 8,914억 원으로 전년대비 3,395억 원 3.6% 증가, 지역보험료는 1조 3,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8억 원 9.2% 증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년대비)
보험료 (억 원)	계	78,886	92,975	103,927	107,772	**112,294**	4.2
	직장	67,394	80,663	91,517	95,519	**98,914**	3.6
	지역	11,492	12,312	12,409	12,253	**13,381**	9.2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원)	계	13,892	15,740	16,977	17,195	**17,744**	3.2
	직장	15,142	17,609	19,701	20,380	**21,042**	3.2
	지역	11,150	11,624	11,162	10,594	**11,133**	5.1
1인당 월평균 보험료(원)	계	7,413	8,654	9,590	9,904	**10,393**	4.9
	직장	7,639	9,189	10,612	11,223	**11,807**	5.2
	지역	6,814	7,248	7,038	6,742	**7,149**	6.0

주) 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 **(징수)**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금액은 11조 1,624억 원으로 전년대비 4,707억 원(4.4%) 증가

– 전체 징수율은 99.4%, 직장 징수율 99.7%, 지역 징수율 97.4% 달성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년대비)
부과금액 (억 원)	계	78,886	92,975	103,927	107,772	**112,294**	4.2
	직장	67,394	80,663	91,517	95,519	**98,914**	3.6
	지역	11,492	12,312	12,409	12,253	**13,381**	9.2
징수금액 (억 원)	계	77,388	91,801	102,431	106,917	**111,624**	4.4
	직장	66,206	79,485	90,309	94,940	**98,588**	3.8
	지역	11,181	12,316	12,123	11,978	**13,036**	8.8
징수율 (%)	계	98.1	98.7	98.6	99.2	**99.4**	
	직장	98.2	98.5	98.7	99.4	**99.7**	
	지역	97.3	100	97.7	97.8	**97.4**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붙임2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적용대상

구 분	적용 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체계

1단계 (인정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2단계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판정 - 공단직원이 조사한 인정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
▼	

3단계 (장기요양 급여 이용)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송부 - 수급자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의 가정에서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음
4단계 (비용 청구, 심사·지급)	◈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 공단은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대상 금액 제외) 심사 후 지급
5단계 (이용지원)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일반사항,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등 수급자를 위한 이용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 장기요양 등급별 대표적 상태

등 급	수 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급여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음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종 류	내 용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설급여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